

보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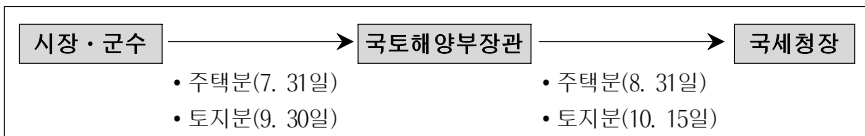
제 21 조 과세자료의 제공

(시장·군수 → 국토해양부 → 국세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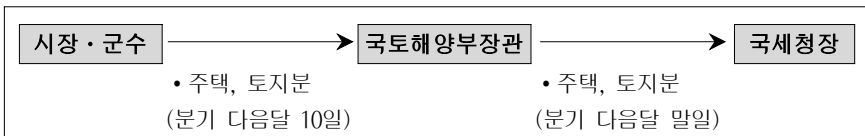
주택분 재산세 자료는 7월 31일, 토지분 재산세 자료는 9월 30일까지

시장·군수는 재산세 자료 중 주택분은 7월 31일, 토지분은 9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① 정기분 재산세 과세자료 통보절차



② 수시분 재산세 과세자료 통보처리절차



●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3. 31 개정)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8. 2. 29 개정)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8. 2. 29 개정)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 3. 31 개정)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8. 2. 29 개정)
- ⑥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가조관계등록전자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08. 2. 29 개정)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와 재산세 부과자료의 통보내용

국토해양부장관은 각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주택·토지의 주소, 과세표준, 재산세액, 과세표준구간별 세액, 세부담상한초과액,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등을 국세청장에 통보한다.

통보내용으로는 당초 내용과 재계산의 조정내용을 구분표시하여 전산매체로 통보하며, 재산세 감면·분리과세내용, 별장, 그 밖의 보유부동산 자료도 통보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7조 【과세자료의 제공】

-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008. 2. 29 개정)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 주택의 소재지
3. 재산세 과세표준
4.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개별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및 총재산세액
- 4의2.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액이 산출된 경우 그 재산세액 (2010. 9. 20 개정)
5.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6.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7.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에서의 재산세액
8. 세부담 상한을 초과하는 세액
9.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10. 그 밖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21조제3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008. 2. 29 개정)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 토지의 소재지
 3. 재산세 과세표준
 4.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 4의2.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액이 산출된 경우 그 재산세액 (2010. 9. 20 개정)
 5.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6.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
 7.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에서의 재산세액
 8. 세부담 상한을 초과하는 세액
 9.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10.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자료를 통보하되, 당초에 통보한 내용과 재계산시 조정된 내용을 구분 표시하여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008. 2. 29 개정)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8. 2. 29 개정)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
 2.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 및 같은 법 제13조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2010. 9. 20 개정)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외의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

⑤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2008. 2. 29 개정)

▲ 시행규칙 제7조 【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①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1), 별지 제9호서식(2), 별지 제9호서식(3), 별지 제9호서식(4), 별지 제9호서식(5) 또는 별지 제9호서식(6)에 따른다.

(2006. 7. 13 개정)

③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1) 내지 별지 제10호서식(3)에 의한다.

④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1), 별지 제11호서식(2), 별지 제11호서식(3) 또는 별지 제11호서식(4)에 따른다. (2006. 7. 13 개정)

제 22 조 시장·군수의 협조의무

(의견조회와 20일내 회신)

❖ 관할세무서는 시장·군수에 의견조회하며, 20일내 회신

납세의무자의 재산세 자료와 관련 종합부동산세 관련자료는 대부분 각 시·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바, 관할과세관청은 과세물건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에게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에 대해 의견조회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시장·군수는 의견조회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회신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시장·군수의 협조의무】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의견조회 : 납세자 인적사항 · 과세사항 등 회신

관할세무서장 등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의견조회 사유, 의견조회 내용이 기재된 의견조회서로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고, 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의견조회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내용, 재산세액 변동에 따른 과세물건 세부조정내역, 재산세 세액조정 전산처리일 등이 기재된 의견회신서를 20일 이내에 회신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8조 【의견조회 및 회신】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2008. 2. 29 개정)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 의견조회 사유
3. 의견조회 내용

② 시장·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2008. 2. 29 개정)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 의견조회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내용
3. 재산세액 변동에 따른 과세물건 세부 조정내역
4. 재산세 세액조정 전산처리일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의견조회관련 서식】

- ①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 ②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 23 조 질문 · 조사

(공무원의 질문 · 조사 · 제출명령)

◆ 질문 · 조사 · 제출명령권의 범위

종합부동산세의 신고 · 납부관련 탈루나 오류에 대한 적정여부 파악 등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공무원에게 질문 ·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질문을 하거나 당해 장부 · 서류 그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질문조사를 위해 조사원증을 제시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 【질문 · 조사】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 ·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법인세법 제10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3. 제1호에 규정하는 자와 거래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9조 【질문 · 조사】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2008. 2. 29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9조 【조사원증】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 24 조 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과세관련 자료의 수집권한

공무원의 질문·조사권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관련 탈루나 오류의 적정여부과악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를 위해 관할세무서장 등의 세무공무원이 관계기관에 과세물건의 매각·등기·등록 기타 그밖의 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여 과세행정의 효율을 도모하고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24조 【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주택 및 토지 등 과세물건의 매각·등기·등록 그 밖의 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